

#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규정 제206호)제정 2025. 2. 2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11조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부터 제24조의3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로서 대학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2명의 후보자를 말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이하 “선거”라 함)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4. “후보자”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7. “직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직원, 「국

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회  
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한경국립대학교 대학공무직원 규정」에 따른  
공무직원(다만, 정년을 초과하여 매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공무  
직원은 제외), 산학협력단 및 학생생활관 자체채용직원 중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8. “조교”란 「한경국립대학교 국고조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  
조제1호에 따른 국고조교와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조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조교를 말한다. 단,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보충을 위해 임시로 채용된 계약직조교는 제외한다.

9. “학생”이란 한경국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10. “관할 선관위”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및 「공동단체 등 위  
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우리대  
학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1.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  
한다.

12.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  
한다.

13. “선거운동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및 임기)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학교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4조(구성 및 존속) ① 총장은 총장임기만료 7개월 전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한다.

1. 교원 9명(특정 성별의 위원이 2명 이상 되도록 함)
2. 직원 4명(특정 성별의 위원이 2명 포함되도록 함)
3. 조교 1명
4. 학생 2명
5. 외부위원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선정방법 등은 각 구성단체에서 정하되, 제5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1. 총동문회장이 추천한 외부위원 2명(졸업생 1명 포함)
  2. 교수회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2명(특정 성별의 위원이 1명 포함되도록 함)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추천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⑧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가 차기 총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5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제한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총괄학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2. 총장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3. 연구년, 파견, 휴직, 정직, 공로연수 중인 사람
4. 총장후보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
5. 총장후보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

제6조(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의 관리(관할 선관위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 선관위와의 협의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총장임용후보자의 자격기준 및 연구윤리 검증
6.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공고
7.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제7조에 따라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  
원장이 소집·개최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추천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속한 직  
원 중 약간 명을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및 위원이 될 수 없

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후보자의 추천자가 된 경우

5.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 우리대학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 수행 및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10조(위원의 보궐) 위원이 해임 또는 사임 등으로 궐위 시 총장은 궐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공고 후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은 해당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③ 후보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① 선거일을 공고하는 날 기준으로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정직 제외) 및 재학생(구 한국복지대학교 소속 학생 포함)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투표의 경우 연구년, 파견, 휴직 중인 교직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교내 연구년인 교직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거인 투표반영비율은 교원 73%, 직원 및 조교 22%, 학생 5%로 하되, 매 총장선거 시 각 구성단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13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제12조 제1항의 교직원 선거인 중 20명 이상의 추천(중복추천 허용)을 받은 사람
2. 본교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학식과 덕망 및 경륜을 갖춘 유능한 내·외부인사
3. 후보자의 총장 임기 종료일까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제14조(후보자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총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1. 부총장, 대학원장, 총괄학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2. 각 직능단체의 장(교수회장, 교수회 부회장, 직원협의회장, 조교협의회장)

#### 제4장 선거기간 및 후보자등록

제15조(선거관리의 위탁) 선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관할 선관위에 위탁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2.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16조(선거일 결정 등)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에 속한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50일부터 60일 이내
  2.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 ②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확정일 및 열람기간, 투표소의 설치 수 및 설치장소, 투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선거공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을 공고하는 날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 후 선거공고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7일 전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교원, 직원·조교, 학생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작성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기간 및 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 선관위·이의신청자·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 존속기간 동안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추천위원회는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방법으로 투표할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써 작성, 열람, 전송의 방식을 적용하되,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9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위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등록신청서
2. 교수 또는 부교수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추천서
4. 기탁금 납부 확인서(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보직사퇴서(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관할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과 제1항 각 호의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사본 각 1부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대학발전계획서
5. 추천서
6. 총장후보자 서약서
7. 최종 학위수여 증명서(또는 학위기 사본)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게시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선거홈페이지”라 함)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할 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⑦ 제13조제2호에 따라 외부인사가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무인(拇印)은 불허함)한 추천서를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총장임용후보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탁금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③ 위원회는 1차 투표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입후보자 또는 선거기간 중 입후보자를 사퇴한 자의 기탁금은 각 기탁자의 명의로 본교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④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탁금을 유족에게 반환한다.

## 제5장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선거공보의 배부
2.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3. 정보통신망의 활용
4. 선전벽보의 부착
5. 소형인쇄물의 배부

③ 선거일에 실시하는 합동연설회(실황중계 포함)를 제외하고 후보자는 제2항 각 호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와 선거인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인은 제2항제5호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4호는 관할 선관위에서 부착하고, 같은 항 제5호는 추천위원회

에서 배부하며, 그 밖에 각 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본 규정에 따른 연설·토론회를 제외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 포함)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선거공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게재되어야 한다.

1. 성명, 기호 및 사진
2. 학력 및 주요 경력
3. 주요 연구업적 목록
4. 대학관 및 총장관
5. 우리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소견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확인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이 경우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 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송하게 할 수 있다. 단, 학생선거인에게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홈페이지에만 게시한다.

⑥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⑦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신청을 하고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⑧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 선관위가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붙일 수 있다.

⑨ 선거공보의 규격·면수·작성수량·제출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추천위원회는 개최방법, 횟수, 일시, 장소를 정하여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의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의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공개토론회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학내의 조직, 단체, 후보자, 선거인은 소규모의 정견발표회, 간담회, 설명회 등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5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선거인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로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

2. 정보통신망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의견을 게시하는 방법

3. 제2항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화상·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편의,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자질·정책검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를 위한 선거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또는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자질·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④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화상·동영상 등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선거홈페이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선전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전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우리대학의 주된 건물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선전벽보의 정정·철회·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23조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선전벽보의 작성 내용, 규격, 수량,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소형인쇄물 배부)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형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소형인쇄물의 작성규격, 배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규정상의 정책홍보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임용 후보자가 되어야 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 등을 하는 행위
2.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3.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비방
4. 추천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직원에게 보직 또는 인사상 이익 등을 약

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추천위원회는 경고, 시정 명령 또는 후보자 자격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람 또는 간부급직원(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함)은 소속·담당하는 기관·부서·실·팀 등에 속한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함)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 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 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장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

제31조(투표·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선관위가 관리하되, 추천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을 관할 선관위와 협의한다.

②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추천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 선관위의 바로 위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직접투표 또는 온라인투표로 할 수 있으며, 두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직접·비밀의 방법으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투표방식, 동순위자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용지 기표방식의 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사람의 투표·개표의 참관, 개표관람은 관할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최다득표한 후보자를 1순위로, 차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를 2순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상위 2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결선투표 결과 1, 2순위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다.

④ 결선투표 시 교원, 직원, 조교 선거인은 제32조의 투표방법으로 재투표하되, 학생 선거인은 1차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결선투표 대상자의 총 득표수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제35조(선정결과 통보 및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종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학내에 공고한다.

② 총장은 선정된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천하되, 총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일 등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제38조(연구윤리검증 및 선정취소) ① 추천위원회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공고 후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2007년 2월 1일 이후의 연구실적에 관한 연구윤리 저촉 여부 검증을 우리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경국립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검증결과를 추천위원회 및

총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이 판명되고 해당 연구윤리위반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취소를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제4항의 선정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하고,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선정취소결정을 총장 및 총장임용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연구윤리 검증 절차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39조(선정 무효·취소에 따른 재선정 등) 추천위원회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한다.

1. 이 규정에 따라 선정 공고된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가 된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재투표일을 정하고 선거일을 재공고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이 규정에 따라 선정 공고된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가 된 경우에는, 1차투표 시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하는 1명을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7장 보 칙

제40조(비용지급)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업무 협조)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 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세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 부 칙<규정 제206호, 2025.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공모 지원서

1. 성명 : (한자)
2. 생년월일 :
3. 주소 :
4. 전화번호 : 휴대폰( ), 사무실( ), 자택( )
5. E-Mail :
6. 직업 :
7. 최종 학력 :
8. 주요 경력 :

상기 본인은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모에 입후보하고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 19조에 따라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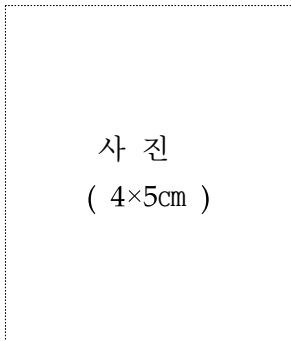
한경국립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 학력은 최종학력만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1~2개만을 기재 하며,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대학발전계획서는 한글 전산파일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력 서

##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E-mail		
연 락 처	(주택) (사무실) (휴대전화)	



※ 주소는 연락이 가능한 실 거주지를 기재하십시오

## 2. 학 력

구분	학교명	소재 국가	학과명(전공)	수학기간	학 위 취득일	학위명
학사				~		
석사				~		
박사				~		

※ 동일한 학위를 2종류 이상 취득한 경우는 칸을 추가하여 사용하며, 수학기간은 날짜까지 기재합니다.

※ 소재국가는 대한민국, 미국 등으로 해당 대학 소재 국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주요경력

기간(연월일)	기관명	직위(직급)
~		
~		
~		
~		
~		
~		
~		
~		
~		
~		

※ 주요경력은 10개 이내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4. 주요 연구실적(논문 및 저서)

구분	제 목	발표 연월	발표지명	저자 수	ISSN (ISBN)

※ 구분란에는 석사, 박사, SSCI, A&HCI, SCIE, SCOPUS, (연구재단)등재, 등재후보, 저서를 기재합니다.

※ 특허는 구분에 특허, 제목에 특허명, 발표연월에 등록일자, ISSN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기타 창작활동 실적은 양식을 수정하여 기재합니다.

※ 연구실적은 10개 이내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첨부 가능하며, 총장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2007년 2월 1일 이후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 실시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수상경력



## 7. 교육공무원 지원 결격 여부

항 목	본인 해당여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인 해당여부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x" 있으면 "○"로 표기합니다.

상기 본인은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위의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 ○    인

[별지 제3호서식]

## 자 기 소 개 서

지 원 자 ○ ○ ○ 인

※ A4용지 2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 대학 발전 계획서

지 원 자 ○ ○ ○ 인

1. 대학 중장기 발전 비전 및 전략
2. 대학재정
3.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4. 학생, 교수, 직원에 대한 복지
5. 교육여건 개선
6. 기타

※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합니다.

## 추천서

추천 대상자	성명	
	소속	
	생년월일	

위 사람을 환경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공모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환경국립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장 귀하

- ※ 1) 환경국립대학교 재직 교직원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함(추천자 1인 1매 사용)
- 2) 중복 추천은 허용합니다.

## 지원자 서약서

본인은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심사기간 중 품위와 양식을 지킬 것이며, 총장 후보자 선정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 ○ ①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총장 임용후보자 공모 지원 철회서

1. 지원자 성명 :
2. 생년월일 :
3. 철회 사유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공모 지원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 ○ ①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